

「해외플랜트 시장개척지원」 사업

운영세부지침

2026. 1



「해외플랜트 시장개척지원」 사업 운영세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 지침”)에 규정된 내역사업 중 하나인 「해외플랜트시장개척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보조사업자로서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사)한국플랜트산업협회를 말한다.
2. “참여기업”이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참여기업 중 주관 수행사를 “신청사”라 하고, 부수 참여사를 “공동수행사”라 칭한다.
3. “플랜트”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3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설비 또는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정설비”라 함은 전체 플랜트 중 일부이며, 독립적 기능을 가진 복합적 설비를 말한다.
5. “프로젝트”라 함은 특정 시설, 공장, 용역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수행하는 한시적인 과업의 총합을 말한다.
6. “타당성조사”라 함은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전,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 또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 현황, 경제성, 기술적 용 가능성 등을 미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전략 플랜트 프로젝트”라 함은 해외 국가기관, 국영기업 등의 유력 발주처와 우리 정부기관 또는 기업이 공동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8. “산업개발계획”이라 함은 저개발국가의 산업 개발 및 산업기반 시설, 대규모 플랜트 단지 건설을 위해 사업초기에 수립하는 개발계획을 말한다.
9. “투자개발사업”이라 함은 기초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 중 금융권 투자유치 및 금융조달을 위해 타당성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10. “시장개척조사” 라 함은 플랜트 프로젝트 또는 공정설비 수주를 위하여 해외 현지의 시장 및 사업환경 현황, 입찰정보 등을 미리 조사하고 발주처 면담을 통해 수주교섭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저개발국”이라 함은 세계은행 소득기준분류상의 고소득국가(High-income economies)를 제외한 국가를 말한다.
1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3.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14. “참여인원”이라 함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소속의 인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투자개발사업 (본타당성조사)
3. 저개발국 산업개발계획 수립 사업
4. 해외 전략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5.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및 공정설비 수주를 위한 시장개척조사 사업
6. 산업통상부 장관이 승인하는 국·내외 시장조사, 수주교섭, 프로젝트 플라자 포럼 등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수주지원사업

제2장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지침 제4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공모사업의 검토·조정
3. 참여기업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변경·해지
4.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사업비의 재교부, 정산 및 반환 등
5. 사업의 수요조사 및 발굴
6.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 산업계, 학계,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전담기관 등에서 플랜트 사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중에서 25명 내외의 “플랜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 중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의 관리책임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
- ⑤ 평가위원회는 운영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역사업의 세부 평가기준 검토 및 조정
 2.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3.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 상 보조금 신청액 조정
 4. 결과보고서 평가
 5. 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6. 그 밖에 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⑥ 평가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평가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등 사업 심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 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⑧ 평가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된 경우에는 심의에서 배제한다.
- ⑨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매체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⑩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회의 참석, 서류검토 등 평가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참여기업) ①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협약체결 및 지원 대상 사업의 수행
 3. 정부지원금 이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의 현금 및 현물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지원

5. 중간진행상황 보고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6.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제3장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

제7조(사업공고)

- ①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지침 제6조에 따라 공모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공고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이 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기본방향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 대상 분야
 3.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평가 기준 및 지표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등

제8조(사업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파일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가. 사업계획서 요약
 - 나. 프로젝트 개요 및 추진경위
 - 다. 발주처 관련 정보 및 기술 적용 계획
 - 라. 프로젝트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마. 조사 계획 및 조사 내용
 - 바. 수출 파급효과 및 발주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 사. 참여기업의 사업수행 능력 및 외주용역기관 정보
 - 아. 발주예상기관과 참여기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 관한 양해각서(MOU), 또는 발주예상기관이 참여기업에 타당성조사 수행을 요청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 또는 서한(Letter, E-mail 등) 중 1건 이상의 문서 (다만, 기 작성된 문서가 있을 경우에 한함)
 - 자. 기타 관련자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원본은 협약 시 제출)
② 전담기관의 장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에 추가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는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의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여 평점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한 프로젝트의 내용 및 업체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13조 제2항의 사유로 지원예산의 여분이 발생할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⑥ 참여기업이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신청 사업의 중복지원, 중복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참여기업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자체 검토하고 제5조에 의해 개최되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장 사업비의 산정

제10조(사업비 산정) ① 평가위원회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내역을 심의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을 결정한다.

② 지원 대상 사업비 구성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 가. 국외 여비 (항공료, 체재비 등)
- 나. 국내 여비 (국내 출장비)

2. 운영비

- 가. 일반수용비 (회의제경비, 통신비, 교통비, 통역비, 자료수집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및 보험료 등)
- 나. 일반용역비 (외주용역비)

3. 직접 인건비(단, 참여기업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정부지원금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 사업별 정부지원금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시장개척조사 사업의 경우 2억원 (다만, 발주금액 3억불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저개발국 진출, 공기업 참여사업 등 평가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가능)

2. 해외 전략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3억원

3. 저개발국 산업개발계획 수립 사업의 경우 5억원

4. 산업통상부 장관이 승인하고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국·내외 시장조사, 수주교섭, 프로젝트 플라자 포럼 등 기타 수주지원사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

② 참여기업 규모별 총 사업비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은 50% 이내

2. 대기업은 50% 이내(단, 대기업은 저개발국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사업, 해외 전략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저개발국 산업개발 계획 수립 사업에 한하여 신청사로 참여가능)

3. 1,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수행사로 참여할 경우 1호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 이내 (단, 이 경우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금 사용액이 50% 이상 이어야 함)

③ 평가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이 신청사인 프로젝트에 지원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신청사업 중 지원 적합한 프로젝트가 없어 70%에 미달할 경우 중견 및 대기업이 신청한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부담금) ① 민간부담금은 참여기업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현물 부담 금액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협약체결 시 별표2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해약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별표2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되, 운영지침 제9조 2항에 따라 협약내용의 일부를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운영지침 제9조 3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지침 제10조 3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후에 개최되는 평가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일을 소급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단, 협약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의 결과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약기간은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되 협약 변경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기간 종료 15일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참여기업이 요청을 한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하는 경우
- ②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책임자, 참여인원 변경
 2. 사업비 비목 변경(단, 비목 예산의 30% 이상 세목 간 변동의 경우도 포함)
 3. 협약기간 변경
 4. 사업비 계좌 변경
- ③ 협약변경의 효력은 참여기업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참여기업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2. 혀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의 해지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부 장관이 보조금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통지를 협약의 해지로 갈음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참여기업은 해지 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귀책사유에 따라 「보조금법」 및 본 지침 제23조에 의해 제재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6장 협약의 이행

제16조(정부지원금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선정금액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기업에 교부한다.

1. 정부지원금은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이 교부율을 결정하여 교부
2. 기 교부된 정부지원금의 소진이 예상될 경우, 참여기업은 예산 집행 계획 등을 첨부하여 추가 교부를 요청하고, 전담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예산 교부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비를 사용하고,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2.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타용도 사용 금지)
3. 별표3에 따라 청구서, 계산서, 영수증 등 사업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구비
4. 협약기간 내 사용 (단,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지출은 예외)
5. 사업비 사용실적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
6. 외주용역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외주용역기업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제18조(중간진행상황 보고) ① 협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의 반기가 되는 시점에 중간 진행 상황보고(별지 제7호 서식)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업체가 제출한 중간 진행 상황보고서를 통해 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참여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19조(사업 결과 평가) ①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는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의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여 평점하고,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결과보고서를 적정한 것으로 결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참여기업에 결과보고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고,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의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요청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평가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 정산) ①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서류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전문 회계법인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③ 위탁정산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1. 관계법령 및 본 지침에 의하여 사업비 적정 사용여부 검토
2. 사용금액, 최종잔액, 정부지원금 잔액 등을 산출하여 감사보고서 작성
3. 미비 사항이 있을 시 참여업체에 소명 및 보완 요청
4.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해 참여기업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결과 확정
5. 정산 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6. 위탁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지급

④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불인정 비용과 추가 인정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사업비를 환수 또는 지급한다.

⑤ 사업비 정산 결과,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사업비가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장 사후관리

제21조(문서의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원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참여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의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프로젝트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 및 환경 현황 자료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적 목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관리, 감독 등의 목적으로 정부기관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보존기간은 「보조금법」 및 운영지침에 따라 정한다.

제22조(추진현황 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지원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이나 참여기업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지원 프로젝트 수주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담기관에 수주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본 지침 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하거나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협약이 해지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5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본 운영세부지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 산정
2. 환수 결정 후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환수금 감면 여부를 평가 위원회 심의 상정 가능

③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부지원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평가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장 기타

제24조(관리운영예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사업 예산의 10% 이내의 금액을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제1항의 관리비용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발생하는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결정 및 해석을 따른다.

[별표 1]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표

(플랜트 프로젝트(EPC))

평 가 항 목	배 점	평점사유	
1.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40)	1-1. 재원조달 가능성 가. 공신력 있는 자금 기 확보 여부 나. 국제금융기구, 수출신용 기관(ECA)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로 투자자 혹은 대출자로부터 긍정적 의사 확보 여부	15	*항목별 가능성에 따라 한도 안에서 점수 산정
	1-2. 발주국 신용도 가. OECD 국가등급	5	
	1-3. 발주처의 추진능력 가. 정부주도 나. 국영기업 혹은 관민 혼합기업 다. 프로젝트에 특별한 연고권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민간기업 등	15	
	1-4. 기술적 가능성 가. 기술적용 가능 여부 나. 수주추진기업의 기술 확보 여부	5	
2. 프로젝트 수주가능성 (20)	2-1. 발주처와의 관계 가. 발주처와 프로젝트 추진 경험 유무 나. 발주처가 우리나라와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다. 발주처 발급 문서 유무	15	
	2-2. 발주국과의 관계 가. 정책적 자원부국 나. 국내기업 진출 여부 다. 외교관계	5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사유
3. 프로젝트 수행가능성 (25)	10	3-1. 신청업체의 F/S수행 능력 가. 해외 프로젝트 F/S 수행경험 유무 나. 국내 프로젝트 F/S 수행경험 유무 다. 수행조직 확보 및 수행가능 여부
	10	3-2. 신청업체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가. 유사 해외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나. 유사 국내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등
	5	3-3. F/S 예산편성의 적정성 가. 인건비 적정 여부 나. 경비 적정 여부 다. 외주용역비 적정 여부 등
4. 프로젝트 수행파급 효과 (15)	10	4-1. 수출파급효과 가. 국내 생산 기자재, 용역 수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업가능성 여부 나. 후속 연관프로젝트의 가능성 다. 기타 파급효과 등
	5	4-2. 발주국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개발 효과 나. 환경에 미치는 효과 등

[별표 1-1]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표

(플랜트 공정설비)

평 가 항 목	배 점	평점사유
1.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30)	20	
	10	
2. 프로젝트 수주가능성 (50)	30	*항목별 가능성에 따라 한도 안에서 점수 산정
	15	
	5	
3. 프로젝트 수행가능성 (10)	10	
4. 프로젝트 수행 파급 효과 (10)	10	

[별표 1-2]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표

(산업개발계획)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사유
1-1. 대상사업의 필요성 가. 해당국 내 대상사업의 필요성 나. 해당국 경제개발 효과 다. 해당국 산업개발 기반 조성 등	20	
1.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40)		
1-2. 발주처의 추진능력 가. 정부주도 나. 국영기업 혹은 관민 혼합기업 다. 프로젝트에 특별한 연고권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민간기업 등	20	*항목별 가능성에 따라 한도 안에서 점수 산정
2. 발주처· 발주국과의 관계 (10)	5	
2-1. 발주처와의 관계 가. 발주처의 추진의지 나. 발주처와의 사업추진 경험 다. 발주처가 우리나라와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등 라. 발주처 발급 문서 유무		
2-2. 발주국과의 관계 가. 정책적 자원부국 나. 국내기업 진출 필요성 등	5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사유
3. 프로젝트 수행능력 (20)	10	
	5	
	5	*항목별 가능성 에 따라 한도 안에서 점수 산정
4. 프로젝트 수주가능성 (30)	25	
	5	

[별표 1-3]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표

(시장개척조사)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사유
1. 시장개척의 필요성 (50)	1-1. 프로젝트 필요성 가. 현지 시장에 필요한 프로젝트인지 여부 나. 후속 프로젝트의 연계 가능성	30	
	1-2. 해당 분야의 해외진출 적합성 가. 해당 분야의 해외진출 지속 가능성 나. 해당 분야의 성장 가능성 및 경쟁력	20	
2.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40)	2-1. 발주처의 추진능력 가.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능력 다. 해당 분야 경험 등	20	*항목별 가능성이 따라 한도 안에서 점수 산정
	2-2. 신청업체의 수행 능력 가. 유사 해외 납품실적 유무 나. 유사 국내 납품실적 유무 등	20	
3. 프로젝트 수행 파급 효과 (10)	3. 수출파급효과 가. 국내 생산 기자재, 용역 수출, 국내 중소 기업과의 협업가능성 여부 나. 기타 파급효과 등	10	

[별표 2]

협약체결시 제출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원본 /사본	간인	비 고
1	협약서	2	원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간/참여기업 간 체결 - 별지 제4호 서식
2	사업계획서 (사업비 세부내역 포함)	2	원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비 등에 맞춰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3	참여기업과 외주용역기업간의 계약서(체결시)	2	사본 가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이 특정 부분을 외주 용역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출
4	정부지원금 입금계좌신고서 (정부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입금용)	1	원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주(법인 또는 대표자), 계좌번호 등 - 첨부 양식
5	통장사본	1	사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주, 계좌번호 수록면 - 민간부담금 입금 내역면 (민간부담금 현금입금 시)
6	인감증명서	1	원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7	사업책임자 서약서	1	원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5호 서식
8	사업책임자 신분증	1	사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책임자 확인

[첨부]

정부지원금 입금계좌 신고서

한국플랜트산업협회 貴中

당사의 결제계좌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통장 인감	증명 인감

거래은행명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참여기업명 :
사업자 번호 :
대표(이사) : (인)
신고일 : 년 월 일

<주의사항>

- 결제계좌 신고서의 통장인감과 첨부한 통장사본의 인감이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위의 표에 기재한신 내용(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과 첨부한 통장사본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예금주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성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표 3]

사업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과목구분			산정기준	증빙서류
비목	세목	항목		
여비	국외여비	국제항공료	○ 실비정산	○ 항공료 영수증 ○ 여권사본 또는 입출국증명서류 등(발주처 인사방한에 따른 항공료 포함)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국외 여비 지급표 5항 단, 초과 숙박비는 실비정산 가능	○ 출장 기안서, 품의서 등
		현지항공료	○ 실비정산	○ 항공료 영수증
		현지교통비	○ 현지 교통비 (현지 차량임대 및 유지비포함)	○ 관련 영수증
		기타여비	○ 공항세 등 기타경비	○ 관련 영수증
	국내여비	국내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	○ 관련 영수증 ○ 출장 기안서, 품의서 등
운영비	일반수용비	회의제경비	○ 국내외 회의실 사용료 등 회의제경비	○ 관련 영수증 및 서류 - 회의자료(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 등) 첨부
		통역비	○ 현지 사용 통역비	○ 관련 영수증
		통신비	○ 현지 사용 통신비	○ 관련 영수증
		자료수집비	○ 조사 목적의 자료에 한함 (국내·외 포함)	○ 관련 영수증
		사무용품비	○ 소모품성 사무용품 (보존성 자산은 제외)	○ 관련 영수증
		인쇄비	○ 조사 활동 관련 인쇄비	○ 관련 영수증
		정산수수료 및 보험료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규정 ○ 이행보증보험료	○ 정산시 발행 ○ 관련 영수증
	일반용역비	기타경비	○ 각종 수수료, 운송료 등	○ 관련 영수증
인건비	보수	직접인건비	○ 기획재정부 고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인건비 산정 ○ 참여자의 참여율은 여타 정부출연 사업 참여율과 합하여 100%이내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이내 (인건비 중 민간부담분 금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관련 영수증 및 서류 - 외주용역 계약서(작업범위, 조사분석, 자문 등) 첨부

[별표 4]

결과보고서 평가기준표

(플랜트 프로젝트(EPC))

평가 항목	세부 내역	배점	평점	비 고
성과물의 적정성	1) 프로젝트의 배경 분석	10		
	2) 현지 수행활동	10		
	3) 시장조사	20		1), 2)항의 최고점수는 10점, 중간이상은 5점이상, 중간이하는 5점이하로 평가
	4) 기술조사	20		3), 4), 5), 6)항의 최고점수는 20점, 중간이상은 15점이상, 중간이하는 10점이하로 평가
	5) 재무분석	20		
	6) 성과 활용도	20		
합 계		100		
종합 검토 의견				

[별표 4-1]

결과보고서 평가기준표
(플랜트 공정설비, 시장개척조사)

평가 항목	세부 내역	배점	평점	비 고
성과물의 적정성	1) 프로젝트 배경	10		1), 2), 5)항의 최고점수는 10점, 중간이상은 5점이상, 중간이하는 5점이하로 평가
	2) 시장조사	10		3)항의 최고점수는 40점, 중간이상은 30점이상, 중간이하는 20점이하로 평가
	3) 기술조사	40		4)항의 최고점수는 30점, 중간이상은 20점이상, 중간이하는 15점이하로 평가
	4) 경제성조사	30		
	5) 성과활용도	10		
합 계		100		
종합 검토 의견				

[별표 4-2]

결과보고서 평가기준표
(산업개발계획)

평가 항목	세부 내역	배점	평점	비 고
성과물의 적정성	1) 프로젝트의 배경 분석	10		1), 5)항의 최고점수는 10점, 중간이상은 5점이상, 중간이하는 5점이하로 평가 2), 3), 4), 6)항의 최고점수는 20점, 중간이상은 15점이상, 중간이하는 10점이하로 평가
	2) 현지 수행활동	20		
	3) 환경 및 시장조사	20		
	4) 기술적용 계획	20		
	5) 재원확보 계획	10		
	6) 성과 활용도	20		
합 계		100		
종합 검토 의견				

[별표 5]

제재 등급 분류 표

분류 등급	제재 사유	제재 대상	참여제한	환수금
1등급	○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운영세부지침 제15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각 호에 해당되어 협약이 중지되거나 해약된 경우	참여기업, 사업책임자	5년	정부지원금 전액
	○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동지침 제15조 1항 3호에 해당되어 해지된 경우	참여기업, 사업책임자	2년	정부지원금 전액
2등급	○ 운영세부지침 제19조(사업 결과 평가)에 따라 평점이 70점 미만으로 수정 보완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자료 제출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참여기업, 사업책임자	1년	정부지원금 의 10%
3등급	○ 전담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참여기업, 사업책임자	1년	-
주의	○ 경미한 수준의 지침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	-	-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본인은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소속기관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신청서

단계구분 (택1)	<input type="checkbox"/> 시장개척조사 <input type="checkbox"/>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투자개발사업 (*본타당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산업개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 범위 (택1)	<input type="checkbox"/> 플랜트프로젝트(EPC)		<input type="checkbox"/> 공정설비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우편번호 :) 주 소 :		(Tel) (Fax)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공동수행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우편번호 :) 주 소 :		(Tel) (Fax)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사업개요	조사대상 (국명,지역)			프로젝트명	(국문) (영문)	
	예상발주처 (주소)			예상발주액	백만불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소요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사업책임자	부서		Tel / (HP)		
		직위		Fax		
성명			E-mail			

산업통상부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운영세부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청서, 요약서,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파일
 3. 신청기업의 전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전자파일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전자파일
 * 전자파일 제출처 : k-plant.kr > 사업추진 > 시장개척지원 신청

[별지 제3호 서식]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플랜트 프로젝트(EPC))

(프로젝트 명 :)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평 점 사유
1.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40)	1-1 재원조달 가능성 가. 공신력 있는 자금 기 확보 여부 나. 국제금융기구, 수출신용 기관(ECA)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로 투자자 혹은 대출자 로부터 긍정적 의사를 확보 여부 등	15		
	1-2 발주국 신용도 가. OECD 국가등급 등	5		
	1-3 발주처의 추진능력 가. 정부주도 나. 국영기업 혹은 관민 혼합기업 다. 프로젝트에 특별한 연고권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민간기업 등	15		
	1-4 기술적 가능성 가. 기술적용 가능 여부 나. 수주추진기업의 기술 확보 여부 등	5		
2. 프로젝트 수주가능성 (20)	2-1. 발주처와의 관계 가. 발주처와 프로젝트 추진 경험 유무 나. 발주처가 우리나라와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등 다. 발주처 발급 문서 유무	15		
	2-2 발주국과의 관계 가. 정책적 자원부국 나. 국내기업 진출 여부 다. 외교관계 등	5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평 점사유
3. 프로젝트 수행가능성 (25)	3-1 신청업체의 F/S수행 능력 가. 해외 프로젝트 F/S 수행경험 유무 나. 국내 프로젝트 F/S 수행경험 유무 다. 수행조직 확보 및 수행가능 여부	10		
	3-2 신청업체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가. 유사 해외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나. 유사 국내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등	10		
	3-3 F/S 예산편성의 적정성 가. 인건비 적정 여부 나. 경비 적정 여부 다. 외주용역비 적정 여부 등	5		
4. 프로젝트 수행 파급 효과(15)	4-1 수출파급효과 가. 국내 생산 기자재, 용역 수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업가능성이 여부 나. 후속 연관프로젝트의 가능성 여부 다. 기타 파급효과 여부 등	10		
	4-2 발주국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개발 효과 여부 나. 환경에 미치는 효과 여부 등	5		
합 계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별지 제3-1호 서식]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명 :)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평 점사유
1.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30)	1-1. 재원조달 가능성 가. 원청 프로젝트의 착수여부 나. 기존 플랜트 설비증설, 유지보수 등의 경우, 공신력있는 소요자금 기 확보 여부 또는 투자자 혹은 대출자로부터 긍정적 의사 확보 여부	20		
	1-2. 발주처의 추진능력 가. 국영기업 혹은 관민 혼합기업 나. 특별한 연고권 또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민간기업 등	10		
2. 프로젝트 수주가능성 (50)	2-1. 기술적 가능성 가. 기술적용 가능 여부 나. 국제적 품질수준 확보 여부 다. 가격경쟁력 확보 여부	30		
	2-2. 발주처와의 관계 가. 납품자격(PQ) 확보 여부 나. 발주처 납품실적 유무 다. 발주처가 우리나라와 추진실적 유무 라. 발주처 발급 문서 유무	15		
	2-3. 발주국과의 관계 가. 정책적 자원부국 나. 국내기업 진출 여부 다. 외교관계	5		
3. 프로젝트 수행가능성 (10)	3. 신청업체의 수행 능력 가. 유사 해외 납품실적 유무 나. 유사 국내 납품실적 유무 등	10		
4. 프로젝트 수행 파급 효과 (10)	4. 수출파급효과 가. 국내 생산 기자재, 용역 수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업가능성 여부 나. 후속 연관프로젝트의 가능성 다. 기타 파급효과 등	10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별지 제3-2호 서식]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산업개발계획)

(프로젝트 명 :)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평 점사유
1.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40)	1-1. 대상사업의 필요성 가. 해당국 내 대상사업의 필요성 나. 해당국 경제개발 효과 다. 해당국 산업개발 기반 조성 등	20	
	1-2. 발주처의 추진능력 가. 정부주도 나. 국영기업 혹은 관민 혼합기업 다. 프로젝트에 특별한 연고권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민간기업 등	20	
2. 발주처 · 발주국과의 관계 (10)	2-1. 발주처와의 관계 가. 발주처의 추진의지 가. 발주처와의 사업추진 경험 나. 발주처가 우리나라와 프로젝트 추진 경험 유무 등 다. 발주처 발급 문서 유무	5	*항목별 가능성에 따라 한도안에서 점수 산정
	2-2. 발주국과의 관계 가. 정책적 자원부국 나. 국내기업 진출 필요성 등	5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평 점사유
3. 프로젝트 수행능력 (20)	3-1 신청업체의 F/S수행 능력 가. 해외 프로젝트 F/S 수행경험 유무 나. 국내 프로젝트 F/S 수행경험 유무 다. 수행조직 확보 및 수행가능 여부 등	10		
	3-2 신청업체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가. 유사 해외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나. 유사 국내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등	5		
	3-3 F/S 예산편성의 적정성 가. 인건비 적정 여부 나. 경비 적정 여부 다. 외주용역비 적정 여부 등	5		*항목별 가 능성에 따라 한도안에서 점수산정
4. 프로젝트 수주가능성 (30)	4-1 수주가능성 가. 국내기업 EPC 수주가능성 나. 후속 연관프로젝트의 가능성 다. 국내생산 기자재, 용역수출 가능성 등	25		
	4-2 파급효과 가. 국내기업 추가 수주가능성 나. 성과활용 인근국가 적용 가능성 다. 대중소 협업 확대 가능성 등	5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별지 제3-3호 서식]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시장개척조사)

(프로젝트 명 :)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평 점사유
1. 시장개척의 필요성 (50)	1-1. 프로젝트 필요성 가. 현지 시장에 필요한 프로젝트인지 여부 나. 후속 프로젝트의 연계 가능성	30		
	1-2. 해당 분야의 해외진출 적합성 가. 해당 분야의 해외진출 지속 가능성 나. 해당 분야의 성장 가능성 및 경쟁력	20		
2.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40)	2-1. 발주처의 추진능력 가.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능력 다. 해당 분야 경험 등	20		
	2-2. 신청업체의 수행 능력 가. 유사 해외 납품실적 유무 나. 유사 국내 납품실적 유무 등	20		
3. 프로젝트 수행 파급 효과 (10)	3. 수출파급효과 가. 국내 생산 기자재, 용역 수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업가능성 여부 나. 기타 파급효과 등	10		
합 계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

○ 사업명 :

○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비용 : 원

- 정부지원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 협약당사자

전담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이하 협회)

참여기업 : 신청사 / 공동수행사 / 공동수행사 (이하 기업)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협회와 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첨부 1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표와 동일함

제2조(사업수행) ① 협회와 기업은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운영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업은 첨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지침개정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지침에 따른다.

② 동 사업을 공동수행하는 경우 한 회사가 사업수행이 불가할 경우 나머지 공동수행 회사가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정부지원금 반납 등 모든 이행을 부담한다. 또는 각 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협회는 동 지침 제16조(정부지원금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중단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업은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를 관련법령 및 동 지침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동 지침 제20조(사업비 정산)의 규정에 따른 정산 결과 정부지원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지원금을 기업에게 차감지급 또는 잔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업 부담금의 관리) 기업은 협회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민간부담금을 정부지원금 입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부담금의 경우에 동 지침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의 보고 등) ① 기업은 동 지침 제18조(중간진행상황 보고) 및 제19조

(사업 결과 평가)의 규정에 따라 중간진행상황 및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① 협회 및 기업은 협의하여 동 지침 제14조(협약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증가 할 수 없다.

② 협회는 동 지침 제15조(협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기업은 기 수령한 정부지원금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의 잔액은 협회가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동 지침 제23조(제재 및 환수)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업 기간 중 조사대상 프로젝트 수주계약 체결 시 동 계약 체결 이전에 사용한 비용만 사업비로 인정한다.

제7조(수주 통보의 의무) 기업은 사업 완료 후 본 프로젝트(연관 수주 포함)를 수주 시 협회에게 30일 이내에 즉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8조(규정의 준수) 협회와 기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며 규정에서 정한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해 동의한다.

제9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협회, 기업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부지원금 입금계좌 제출양식 1부

년 월 일

협회 : 전담기관장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인)

기업 : 참여기업명 / 대표

(인)

사업책임자 (인)

공동수행 기업명 / 대표

(인) (공동수행 회사만 작성)

서 약 서

본인은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 합니다.

[다 음]

1. 사업목적 외에 사업비를 임의 집행하거나, 사업비를 유용 또는 사업비 사용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중대한 협약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기일내에 미제출한 경우
3. 전담기관이 요청한 보완 또는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
4. 전담기관이 참여업체의 불성실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공동수행 기업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공동수행 기업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변경 승인 요청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협약내용의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참여기업명 :

프로젝트명 :

총비용 :

정부지원금액 :

조사기간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사업 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중간진행상황 보고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운영세부지침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사업의 중간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프로젝트 명 :

총 비 용 :

정부지원금액 :

조사 기 간 :

첨 부 : 중간진행상황 보고서 1부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사업 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

※ 중간진행상황 보고는 조사계획 대비 추진상황을 5쪽 내외로 작성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결과보고서 제출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운영세부지침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프로젝트 명 :

총 비 용 :

정부지원금액 :

조사 기간 :

첨 부 : 결과보고서 및 국문요약서 전자파일

<결과보고서의 산업계,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의 배포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공개시점 : 수주 전, 수주 후

*공개범위 : 전체, 부분 (기술, 경제성)

(시장 및 환경 현황 자료는 공익의 목적으로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사업 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결과보고서 평가표

(프로젝트 명 :)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평 점 사 유
1) 프로젝트의 배경 분석	10		
2) 현지 수행활동	10		
3) 시장조사	20		
4) 기술조사	20		
5) 재무분석	20		
6) 성과 활용도	20		
합 계			
종합 검토 의견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별지 제9-1호 서식]

결과보고서 평가표

(플랜트 공정설비, 시장개척조사)

(프로젝트 명 :)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평 점 사 유
1) 프로젝트 배경	10		
2) 시장조사	10		
3) 기술조사	40		
4) 경제성조사	30		
5) 성과 활용도	10		
합 계			
종합 검토 의견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별지 제9-2호 서식]

결과보고서 평가표

(산업개발계획)

(프로젝트 명 :)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평 점 사 유
1) 프로젝트 배경	10		
2) 현지 수행활동	20		
3) 환경 및 시장조사	20		
4) 기술적용 계획	20		
5) 재원확보 계획	10		
6) 성과 활용도	20		
합 계			
종합 검토 의견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프로젝트명						
참여기업						
사업책임자						
조사기간						
총사업비(원)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금		계	
집행금액(원)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금		계	
<p>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및 사용명세서는 협약서 및 운영세부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p>						
<p>첨 부 : 1. 사업비 사용명세서(별지 제11호 서식) 2.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3. 사업비 통장 사본 4. 협약서(사업계획서 포함) 사본 5. 외주용역계약서 사본 6. 사업 변경승인 문서 사본</p>						
참여기업 : (기관명)			(사업책임자)		(인)	
			(대표자)		(인)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p>						

[별지 제11호서식]

사업비 사용명세서

(전자파일(엑셀) 제출)

1. 총 팔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 계획 (협약변경 후 최종금액)	사용금액	잔 액	증감사유
1. 인건비 - 보수				
2. 여비				
- 국외여비				
- 국내여비				
3.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				
합계				이자발생 금액 : 원

※ 당초 계획 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으로 표기
또는 별도로 첨부하여 표기

2. 비목별 사용명세서

가. 인건비

[보수]

집행일	성명	생년월일	해당 업무	노임 단가	참여 개월	참여율 (%)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 계							원	

나. 여비

[국외여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 계				원

[국내여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 계				원

다. 운영비

[일반수용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 계				원

[일반용역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 계				원